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민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668

발의연월일: 2024. 12. 18.

발 의 자 : 한민수 · 박용갑 · 이연희

박상혁 • 이해식 • 이정문

황 희·박해철·복기왕

홍기원 · 소병훈 · 임오경

의원(12인)

제안이유

현행 방송문화진흥회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9인으로 구성하 도록 되어있고, 이사에 대한 선임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되 어있음.

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어 방송문화진흥회뿐만 아니라 방송문화진흥회 가 지배주주로서 사실상의 임명권을 가지는 문화방송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 또한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계속되어왔음.

이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구성 및 임명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 하고, 사장의 선출방식 또한 보다 민주적이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방송문화진흥회의 임원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3인으로 구성하되,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명 및 그 밖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명을 대통령이 임명함(안 제6조제1항 및 제4항).
- 나. 이사회가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임명제청 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(안 제9조제4항 단서 신 설).

법률 제 호

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본문 중 "9명의"를 "13명의"로, "한다"를 "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및"을 ", 지역성 및"으로, "방송통신위원회가"를 "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명 및 그 밖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명을 대통령이"로 한다.

제9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10조제10호에 관한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6조(임원) ① 진흥회에는 임원 | 제6조(임원) ① |
| 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<u>9명</u> | <u>13명</u> |
| 의 이사와 감사(監事) 1명을 두 | <u>의</u> |
| 며,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<u>한</u> | |
| <u>다</u> . 다만, 보궐임원의 임기는 |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|
|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| 있다 |
| 한다. | |
| | <u>.</u> |
| ②・③ (생 략) | ②·③ (현행과 같음) |
| ④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| 4 |
|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| <u>지역성 및</u> |
| 고려하여 <u>방송통신위원회가</u> 임 | <u>대통령이 소속</u> |
| 명한다. | 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 |
| | 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|
| | 7명 및 그 밖의 국회 교섭단체 |
| | 가 추천하는 사람 6명을 대통 |
| | <u>령이</u> |
| ⑤・⑥ (생 략) | ⑤·⑥ (현행과 같음) |
| 제9조(이사회의 구성) ① ~ ③ | 제9조(이사회의 구성) ① ~ ③ |
| (생 략) | (현행과 같음) |
|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| 4 |
|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u><단서</u> | <u>다만, 제</u> |
| <u>신설></u> | <u>10</u> 조제10호에 관한 사항은 재 |

| | 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| 로 의결한다. |
| ⑤・⑥ (생 략) | ⑤·⑥ (현행과 같음) |